



#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48호

2022. 10. 1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44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46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14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7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160호 삼척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열람 공고  
----- 10
- 삼척시 공고 제1190호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1192호 삼척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1211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 144호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7.

삼척시장

- 고시일 : 2022. 10. 7. (금)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1건 (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0일 이내	14일 이상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 <변경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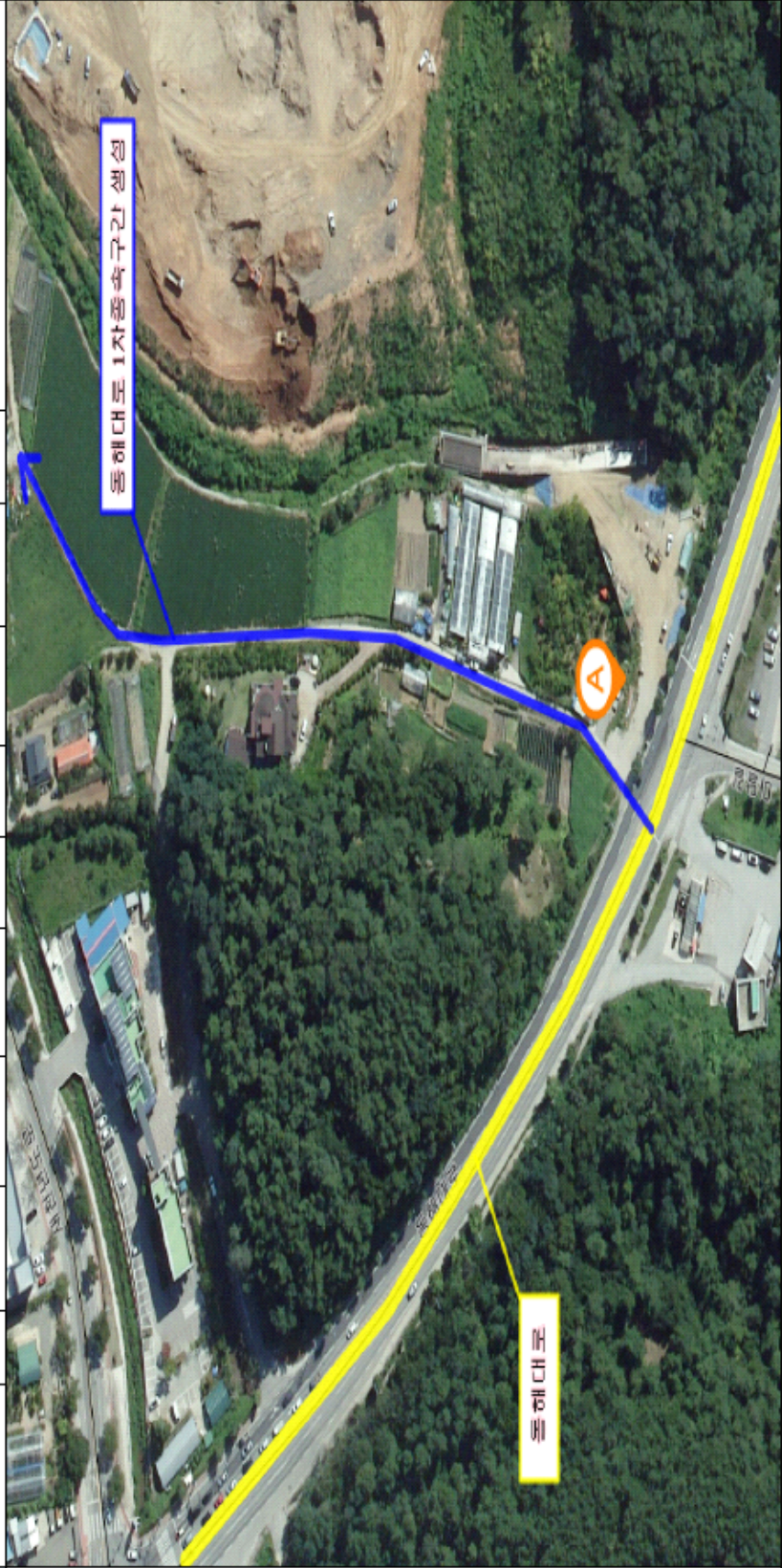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10일 이내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서면 동의 만료일로부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10일 이내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도로명 동해대로 (1차종속구간)	도로 위계 대로	관할행정 구역 교동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동일 도로명	변경 사유
				시작지점 마달동 10-2	끝지점 마달동 175-0	길이 (m)				
				307	5	20	4366-1 → 4366-32	없음	기초번호가 없는 도로구간에 1차 종속구간 생성	



위치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삼척시 고시 제2022 - 146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변경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2.

##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길 48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관(☎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a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도로명주소	부여 2건, 변경 1건					
변경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신로 141-7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신로 141-7	20221012		20090626	지역내 관광지 명칭 활용(환신로)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신로 137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신로 141-7	20221012	건물번호 합병	20090626	지역내 관광지 명칭 활용(환신로)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길 48	20221012	신규부여	20090626	용화해수욕장명칭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마대동 11-1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366-4 (마대동)	20221012	신규부여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삼척시 고시 제2022 -147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413-119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도로명주소	4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산56-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413-119	20221014	신규부여	20090807	자연지형 명칭 반영(산맥)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교통 515-8	강원도 삼척시 인장1길 33-100 (교통)	20221014	신규부여	20090626	지역지명(인장골), 일련번호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 140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798	20221014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 구간 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80-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445	20221014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22- 1160호

삼척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열람 공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삼척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인접 및 관련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삼척시장

1. 공 고 명 : 삼척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열람 공고
2. 열람기간 : 2022. 10. 11. ~ 2022. 10. 25.(15일)
3. 열람내용
  - 가.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 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마. 연차별 투자계획 등
4. 열람장소 : 삼척시 교통과
5. 의견 제출장소 및 방법 : 2022년 10월 25일까지 삼척시 교통과로 서면 제출
6.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교통과(033-570-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척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	--

기타	
----	--

삼척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22 - 1190호

##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내용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삼척시장

### 1. 개최목적

-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청취

### 2.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2. 10. 17(월) 14:00 ~
- 장 소 : 시민회의장(본관 1층)

### 3. 주요내용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중점 추진사업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등

### 4. 기타사항

-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 당일 또는 개최 후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삼척시 복지정책과(033-570-3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기 (2023~2026)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H.P :		
의견사항			

2022. .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 제출방법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 우편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복지정책과 (우편번호 25914)

삼척시 공고 제2022-1192호

## 삼척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삼척시 금고 은행에서 삼척시에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삼척시장

- 1.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 2.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총액	비고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삼척시 공고 제2022-1211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일  
삼척시장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성 있는 운용을 통해 산지 등의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 도모
-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토사유출 사고 및 재난 예방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해당 시설물과 도로 및 주택 등과의 이격거리 조정(안 제13조제2항)

4.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4. ~ 11. 3.(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도시과
- 전 화 : 033 - 570 - 3941
- 팩 스 : 033 - 570 - 3182
- E-mail : aokchoi@korea.kr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광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일 것
  -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 도로
2.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6.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일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p> <p>① ~ ② 생략</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p> <p>2.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밀집한 정도에 따라 입지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리가 다음 각 목 이상일 것(이 경우 호수의 산정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하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lt;개정 2019.7.18.&gt;  가. 5호 이상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나.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50미터(단, 직선거리 50미터 미만이라도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전체가 동의하여야 하나,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주 동의를 일부 생략 할 수도 있다. 주민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p> <p>① ~ ② 생략</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p> <p>2.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p>

현행	개정안
3 ~ 5 생략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7 ~ 8 생략	3 ~ 5 생략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7 ~ 8 생략

[붙임 2]

#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서

■ 조 례 명: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